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9143 제출연월일 : 2025. 3. 20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(蜜原植物)*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* 밀원식물(蜜原植物): 꿀벌이 꽃꿀,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

법률 제 호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4항 중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"를 "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조(밀원식물의 조성) ① ~	제10조(밀원식물의 조성) ① ~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	4		
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			
은 <u>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</u> 정한	<u>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</u>		
다.	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		